

사업계획

[] 승인

[] 변경승인

신청서

※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승인번호(년도 - 시·군·구 구분 - 구분 - 일련번호)

□□□□ - □□□□□□□□ - □□□□□

사업구분	주택건설사업([]전체 []공구별 건설·공급) []대지조성사업
	[]승인 []변경승인

① 사업주체	상 호		등록번호	
			법인등록번호	
	대 표 자		생년월일	
	영업소소재지	(전화번호:)		

② 설계자	성 명	(서명 또는 인)	자격번호	
	사 무 소 명		등록번호	
	사무소소재지	(전화번호:)		

③ 시 공 자	상 호		등록번호	
			법인등록번호	
	대 표 자	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
	영업소소재지	(전화번호:)		

대 지 조 건	④ 대 지 위 치					
	지 번	지 목	대지면적	최 소 대지폭	최 대 대지폭	등 기 명의자
			m ²	m	m	
			m ²	m	m	
			m ²	m	m	
	용 도 지 역		용도지구		용도구역	
	대 지 현 황					
	주 변 현 황					

사업계획개요			※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.		
대지면적(m ²)			건축면적(m ²)		
건폐율(%)			연 면 적 (m ²)		
용적률산정용 연면적(m ²)			용 적 률 (%)		
⑤ 건축물명칭		주 건 축 물 수	동	부속건축물	동 m ²
⑥ 주 용 도		⑦ 주택 형태		총 세 대 수	세대 호 가구
총주차대수	대	착공예정일		사 용 검 사 에 정 일	

(제2쪽)

⑧ 부대시설	시설 종류	설치 현황	단지 내 현황	단지 외 현황
	※ 전기, 도로, 상하수도, 통신설비,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, 개별난방 또는 중앙(지역)난방, 주차장, 조경 시설, 관리사무소, 보안등, 방송공동수신설비, 비상급수시설,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			

⑨ 복리시설 분양시설	시설 종류	면적(㎡)	개소	그 밖의 현황
	※ 어린이놀이터, 운동장, 주민운동시설, 경로당, 주민공동시설, 보육시설, 문고, 유치원, 근린생활시설,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			

⑩ 오수정화시설	형식		용량	(인용)
----------	----	--	----	------

급수설비(저수조)	구분	수량 및 총 용량	
	지상	개	㎡
	지하	개	㎡

주차장	구분	옥내	옥외	인근	면제
	자주식	대 ㎡	대 ㎡	대 ㎡	대
	기계식	대 ㎡	대 ㎡	대 ㎡	
	전기차	대 ㎡	대 ㎡	대 ㎡	

비고	도시형 생활주택([]아파트형 []단지형연립 []단지형다세대): 세대, 공공주택: 세대 토지임대부 ([]분양 []임대)주택: 세대, 세대구분형 공동주택: 세대 세대
	※ 도시형 생활주택, 공공주택, 토지임대부 분양주택,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.

변경사항	※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.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일괄처리 사 항			
	※ 「주택법」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의제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		

[]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·제5항 [] 「주택법」 제15조제4항 본문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([] 승인 [] 변경승인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사업주체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귀하

1. 동별 개요

주/부속구분	[] 건축물 [] 부속건축물		
⑪ 동명칭 및 번호		공구명	
주 용 도			

주택유형별 세 대 수	공 공 부 문									민 간 부 문	
	[] 국민임대	[] 공 공 임 대						[] 공공분양	[] 근로복지	[] 민간임대	[] 민간분양
		소계	5년	10년	30/50년	영구	그 밖의 유형				
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

비고	도시형 생활주택([]아파트형 []단지형연립 []단지형다세대): 세대, 공공주택: 세대 토지임대부 ([]분양 []임대)주택: 세대, 세대구분형 공동주택: 세대										
	※ 도시형 생활주택, 공공주택, 토지임대부 분양주택,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.										

주 구조											
지 붕											
건축면적(㎡)											
연 면 적(㎡)											
지하면적(㎡)											
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(㎡)											
층 수	지하: 층, 지상: 층										
높 이(m)											
승 강 기	승용승강기: 인용 대, 비상용승강기: 인용 대										
층 고											
반 자 높 이											
계단유효폭											
복 도 너 비											
외 벽 두 께											
인접세대와의 벽 두 께											

※ 유의사항: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.

II. 총별 개요

[illegible]

IV. 사업비/자금계획

구 분 []	사업비(천원)		자금계획(천원)	
	대 지 비		사업주체자금	
	주택건축비		국민주택기금	
	부대복리시설설치비		금융기관자금	
	간선시설설치비		그 밖의 자금	
	소 계			
	일 반 분 양 비			
	사 업 비 계		자 금 계 획 계	

구 분 []	사업비(천원)		자금계획(천원)	
	대 지 비		사업주체자금	
	주택건축비		국민주택기금	
	부대복리시설설치비		금융기관자금	
	간선시설설치비		그 밖의 자금	
	소 계			
	일 반 분 양 비			
	사 업 비 계		자 금 계 획 계	

구 분 []	사업비(천원)		자금계획(천원)	
	대 지 비		사업주체자금	
	주택건축비		국민주택기금	
	부대복리시설설치비		금융기관자금	
	간선시설설치비		그 밖의 자금	
	소 계			
	일 반 분 양 비			
	사 업 비 계		자 금 계 획 계	

변경사유 ※ 사업비/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.

※ 구분[]는 형별로 작성하되, 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·상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V. 공구별 개요

※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·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⑩ 공 구 명					
공구별 사업개요			※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.		
대지면적(㎡)		건축면적(㎡)		연면적(㎡)	
주건축물수		동	부속건축물	동	㎡
주 용 도		주 택 형 태		세 대 수	세대
주차대수	대	착공예정일		사 용 검 사 예 정 일	

공구별 부대시설 · 복리시설 · 분양시설			※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.	
부대시설	시 설 종 류	설 치 현 황	단지내 현황	단지외 현황
	※ 전기, 도로, 상하수도, 통신설비,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, 개별난방 또는 중앙(지역)난방, 주차장, 조경 시설, 관리사무소, 보안등, 방송공동수신설비,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			

복리시설 분양시설	시 설 종 류	면 적(㎡)	개 소	그 밖의 현황
※ 어린이놀이터・운동장・주민운동시설・경로당・주민공동시설・보육시설・문고・유치원・근린생활시설・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				

공구별 주차장				※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.		
주차장	구 분	옥 내	옥 외	인 근	면 제	
	자주식	대 ㎡	대 ㎡	대 ㎡	대	
	기계식	대 ㎡	대 ㎡	대 ㎡		
	전기차	대 ㎡	대 ㎡	대 ㎡		

※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.

첨부서류	1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. 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.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토지등기사항증명서(사업주체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) 2. 토지이용계획확인서

근거법규

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 및 제3항
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7조
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2조 및 제13조

유의사항

「주택법」 제102조제5호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·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(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)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작성방법

- ①②③ 다수인 경우에는 ○○○ 외 ○인으로 적으며, "외 ○인"의 현황도 제출합니다.
④ 여러 필자인 경우에는 각 필자별로 적습니다.
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(예: 쌍둥이빌딩, ○○아파트).
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("주상복합"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).
⑦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⑧·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.
⑩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으며(대표 외 형식도 제출합니다), 용량은 대표형식과 대표 외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.
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적습니다(예: 101동, A동, 가동 등).
⑫ ~ ⑮

예) 지하1층(부설주차장)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려는 경우

- 구조: 철근콘크리트, - 용도: 아파트, - 각 층 바닥면적: 850.27㎡

층 구분	구조	용도	바닥면적(㎡)
-1	철근콘크리트	아파트(주차장)	850.27
1	철근콘크리트	아파트	850.27
2	철근콘크리트	아파트	850.27
...	...	...	...
옥탑	철근콘크리트	아파트(물탱크실)	20.45

○: 72-A형, 96-B형 등으로 적습니다.

○: 복층인 경우에는 "복층"으로 적습니다.

⑮ 각 공구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공구명을 명확히 적습니다(예: 1공구, A공구 등).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